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2450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0. 7. 15.

**판결 선고**2020. 8. 12.

## 주 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82,073,2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96,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B은 ① 원고에게 구상금 82,073,2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는 근질권 담보한도액 96,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B 역시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출금 원금 8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은 피고 C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송인우

별지